

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육정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70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7. 7.

발의의원 : 육정미, 권기훈,
김원규, 김재용,
김정옥, 김태우,
이재숙, 이재화,
정일균, 조경구,
하중환 의원
(11명)

1. 제안 이유

10대 마약사범이 최근 5년 새 4배나 급증하는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확산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,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- 나. 유해약물 예방 연수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다. 유해약물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시행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제1항 중 “실시”를 “연 1회 이상 실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학교의 장”을 “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학교의 장”을 “학교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교원 연수)”를 “(연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학교의 장”을 “학교장”으로 하며, “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”를 “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과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홍보 및 캠페인)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, 소식지,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유해약물 예방교육 등)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<u>실시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학교의 장</u>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,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학교의 장</u>은 유해약물 오·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·상담·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유해약물 예방교육 등) ① ----- ----- <u>연 1회 이상 실시</u>-----.</p> <p>② <u>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학교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<u>교원 연수</u>)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<u>학교의 장</u> 및 교사를 대상으로 <u>교원 연수</u>를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<u>연수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학교장</u> ----- - <u>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 <p>② <u>제1항</u>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</p>	<p>② <u>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과 제2항</u>에 따른 연수의</p>

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8조 ~ 제10조 (생 략)

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 및 캠페인)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, 소식지,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9조 ~ 제11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

(붙임)

관 계 법 령

□ 청소년보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3. 생략
4. “청소년유해약물등”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 (이하 “청소년유해약물”이라 한다)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 목의 물건(이하 “청소년유해물건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가. 청소년유해약물

- 1)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류
- 2)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
- 3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
- 4)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환각물질
- 5)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, 중독성,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 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(이하 “청소년 보호위원회”라 한다)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

□ 학교보건법

제9조(학생의 보건관리)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, 질병의 치료와 예 방, 음주·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(誤用)·남용(濫用)의 예방, 성교육, 이 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,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 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